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을 통해 안건의 심의나 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징계를 의회의 의결로서 시장 및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